

● 제302회 ●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685)

2021. 9.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685

I. 동의안 개요

1. 제출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21년 08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08월 18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 나. 에이즈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서울시민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 중으로 '21.12월에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 위탁기간 : 2022.1.1. ~ 2024.12.31.(3년)

- 사업비 : 340,000천원 ('22년)
 -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 170,000천원
 -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 170,000천원
- 수탁자 선정방법 : 재위탁
- 추진현황
 -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 최초위탁 : 1999.1.14.
 - 1차 ~ 2차 : 1999.1.14. ~ 2000.12.31.(1년 단위)
 - 3차 ~ 9차 : 2001.1.9. ~ 2021.12.31.(3년 단위)
 -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 최초위탁 : 1997.1.10.
 - 1차 ~ 4차 : 1997.1.10. ~ 2000.12.31.(1년 단위)
 - 5차 ~ 11차 : 2001.1.9. ~ 2021.12.31.(3년 단위)

나. 주요 위탁내용

-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교육
 - 보건관계자 대상 교육
 - HIV 취약계층 및 노인 대상 교육
 - 에이즈 예방 인프라 사업 등
-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 성소수자 대상 홍보 및 노인 대상 홍보
 - 일반인 대상 및 대중매체 홍보
 - 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
 - 에이즈 예방 인프라 사업 등

다. 필요성

-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에이즈 감염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홍보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

는 전문성과 다년간의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및 제23조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위탁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¹⁾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2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검토

가. 민간위탁 사무의 배경

-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는 성관계, 수혈이나 혈액 제제를 통한 전파, 병원 관련 종사자가 바늘에 찔리는 등의 의료사고에 의한 전파, 감염된 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로 전파되는 수직감염 등의 감염경로가 있음.²⁾
- 에이즈는 확실한 전파경로가 있어 누구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감염위험행동을 하지 않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예방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에이즈 기본정보 소개 페이지참조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에이즈 감염인이 0.02%에 불과하고, 일반인의 82.8% 이상이 에이즈 감염에 대한 낙관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³⁾
 - 에이즈를 자신과는 관계가 없으며 동성애자 혹은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의 질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나.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

- 에이즈는 ‘질병의 전염병(An epidemic of disease)’인 동시에 ‘의미의 전염병(An epidemic of meanings)’로도 불리우며, 질병 자체의 확산으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등 피해를 주는 것과 함께 질병이 내포하는 고정관념과 편견, 배제의 이데올로기 확산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에이즈의 원인, 감염경로, 치료 기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된 확산은 예방, 검진, 치료 노력을 가로막고 에이즈에 취약한 집단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에이즈 감염예방과 퇴치를 위해서는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⁴⁾
- 국내에서는 1985년 국내에 HIV 감염인이 처음 발생한 것을 계기로, 1987년 11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제정된 바 있음. 본 사무는 동법 제3조 및 제 26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무로 법적 타당성을 가짐.
- 또한, 정부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차별적 태도, 낙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정책과 지역사회 홍보·교육

3) 질병관리본부(2019). 2019년 에이즈에 대한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조사.

4) 질병관리본부(2019). 2019년 에이즈에 대한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조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에이즈 인식 개선 및 교육홍보 활동을 시작한 바 있음.⁵⁾

다. 민간위탁 사무 경과 및 현황

- 서울시에서는 에이즈 확산을 막고, 정확한 질병정보와 함께 예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은 1999년,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은 1997년부터 전문단체에 위탁해 운영해왔음.
- 해당사무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 사무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위탁 현황

| |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
|-------------|---|---|
| 위탁기간 | 2019.01.01. ~ 2021.12.31. (3년) | 2019.01.01. ~ 2021.12.31. (3년) |
| 최초위탁 | 1999.01.14 | 1997.01.10 |
| 위탁단체 |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 |
| 인력 | 상근2인 (사무국장 1명, 직원1명) | 상근2인 (사무국장 1명, 직원1명) |
| 위탁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료인·보건인·사회복지사·구급대 교육 - 교육실 운영 - 전문지 제작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매체 홍보 - 성소수자, 어르신 등 대상 홍보 - 캠페인 등 |
| 위탁금액(2021년) | 130,000천원 | 270,000천원 |

라.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통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무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5) 질병관리본부(2019). 「국가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정책」. 주간 건강과질병 12(48)

<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주요사업 추진실적

| 구분 | | 사 업 명 | 추진실적 | |
|-----------------|-----------------------------|----------------------------|-------|-------|
| | | | 2019년 | 2020년 |
| 에이즈 예방 교육 | 일반인 대상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 | 105% | 79% |
| |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강사 교육역량 강화교육 | 100% | 100% |
| | 의료인 및 보건 관계자 대상 | 중고등 보건, 상담교사 에이즈 바로알기 전문교육 | 100% | - |
| | | 복지·구조공무원 대상 에이즈 바로알기 전문교육 | 100% | 100% |
| | | 재가요양센터 요양사 에이즈 바로알기 교육 | - | 100% |
| | 노인 및 HIV감염 취약계층 대상 | 노인 대상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 100% | 150% |
| | | 성소수자를 위한 에이즈 바로알기 교육 | 100% | 150% |
| | 에이즈 예방 전문사업 |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자문회의 | 100% | 100% |
| | | 에이즈 예방교육사업 평가회의 | 100% | 100% |
| 에이즈 예방 홍보 | 성소수자 대상 | 현장캠페인 | 100% | 100% |
| | | 콘돔카페 운영 | 100% | 100% |
| | 노인 대상 | 소책자 제작 | 100% | 100% |
| | | 홍보물 제작 | 100% | 100% |
| | | 복지관 배포 | 100% | 100% |
| | | 캠페인 | 133% | 100% |
| | 청소년 대상 | 홍보수첩 제작 | 100% | 100% |
| | | 캠페인 | 100% | 100% |
| | 대중매체 홍보 | 마을버스(내부, 외부, 후면 광고) | 104% | 100% |
| | | 전자 게시대 | - | 100% |
| | 사업평가 | 사업평가 | 100% | 100% |

○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현재 교육과 홍보, 두 가지 사업 모두 거의 모든 지표에서 100%이상의 목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제시하는 추진실적 달성율만으로는 사업의 정확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목표 대비 실적 측정 외에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인식변화 등을 측정한 결과를 반영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조례」 제4조⁶⁾에서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2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음.
-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은 보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에이즈라는 특수한 질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 따라서,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3호에서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4 종합의견

- 동 위탁사무는 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사료됨.

-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단순한 측면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향후 보다 다양한 성과 지표의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하겠음.

| |
|-------|
| 문 의 처 |
|-------|

| |
|--------------------------|
|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 |
|--------------------------|